

建築士業務 停止 處分에 對한 取消

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 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.

청구인 윤○○는 서울 성동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89. 4월경 건축주인 청구와 정○○의 의뢰를 받고 서울 성동구 소재 청구와 정○○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1동(이하,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)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설계 변경(주 계단 위치 변경)과 허가면적 초과(26.76 m²의 면적 증가)의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 28조 제 61 항 제 9호, 제 20조에 의거 1991. 5. 25자로 피청구인(서울 특별시장)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(1991. 5. 29 ~ 1991. 7. 28)의 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하여,

원고 윤○○는 위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 바 없고, 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시정 권고하였고, 또한 1991. 1. 11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 1991. 2. 3.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서 기왕에 발생한 위법사항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,

대법원에서는

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정○○의 서울 성동구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정○○이 허가면적보다 약 26m²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, 위 정○○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(서울특별시장)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 6

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,

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정○○이 예상되는 건폐율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,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정○○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, 실제로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. 7. 7 자로 종전의 50% 이하에서 60%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,

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자 위 정○○은 1991. 1. 11 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월 3일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,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,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,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

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 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,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.

(1992. 4. 28 대법원 제 1부 판결선고)

※ 참조조문

- 건축법 제 6조(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)
- 건축사법 제 20조(업무상의 성실등 의무)
- 제 28조(건축사사무소의 등록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 명령)
-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2조(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)